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교육지원법안

검 토 보 고

〈선거교육의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5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입법배경	4
2. 법 제정의 필요성	6
3. 제정안의 구성체계	9
IV. 조문별 검토의견	10
1. 제명,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제1장, 안 제1조·제2조·제3조)	10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안 제4조·제5조·제6조) ..	13
3.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선거교육담당관 지정(제2장, 안 제7조·제8조·제9조) ..	16
4. 선거교육진흥원의 설립(안 제10조)	20
5. 선거교육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제3장, 안 제11조·제12조)	25
6. 학교 선거교육 진흥 및 사회 선거교육 지원(안 제13조·제14조)	28
7.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안 제15조·제16조)	35
8. 부칙	37
[참고] 선거교육 관련 사업 추진 현황(2023~2025)	3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2. 27.

다.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선거와 관련 허위·왜곡 정보가 급증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선거 정보에 대한 판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의 하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이 선거 제도를 이해하고 주체적인 유권자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관계로 교육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학교의 선거교육은 명확한 교육 목표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선거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된 선거교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선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선거연수원장은 매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화된 선거교육을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운영함(제9조).

라. 선거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0조).

마.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함(안 제12조).

바. 국가는 학교 교육과정에 선거교육을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은 5년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공개하며, 교원 대상 학교 선거 교육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중앙선거위원회장은 사회 선거교육 프로그램 개발·시행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장비·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배경

최근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선거와 관련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왜곡된 내용이 확산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선거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실제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발언이나 공약과 관련된 허위정보, 조작된 이미지·영상 등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거나, 선거 절차 및 투표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공유되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¹⁾ 따라서,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유권자의 정보 판별 능력과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고,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가능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바, 청소년들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1) '6·3선거'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급증...하루 평균 12.5명 적발(연합뉴스, 2026. 5. 28.)

《 우리나라 선거 및 정당가입 가능 연령 변화 경과 》

연도	선거권 연령	정당가입 가능연령	비 고
1948	만 21세	-	
1960	만 20세	-	「대한민국헌법」 개정(1960. 6. 15.)
2005	만 19세	만 18세	「공직선거법」 개정(2005. 8. 4.)
2020	만 18세	만 18세	「공직선거법」 개정(2020. 1. 14.)
2022	만 18세	만 16세	「정당법」 개정(2022. 1. 21.)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교육은 교사 재량에 의존하거나,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내용 및 교육 시수 부족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지속적·체계적인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²⁾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연수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예산과 조직의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제정안은 선거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체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학교 및 사회 선거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 선거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교사의 눈] 10대 유권자 시대...선거교육은 어디에?(EBS뉴스, 2025. 3. 28.)

[6·3대선] 25만 청소년 유권자 첫 참정권 행사...“민주시민교육체계 이뤄져야”(인천일보, 2025. 5. 19.)

2. 법 제정의 필요성

제정안은 선거교육에 관한 기본원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를 정하고 학교·사회 선거교육, 전문인력 양성, 선거교육진흥원 설립 등 선거교육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선거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법체계로는 입법목적 달성을 어렵거나 별도의 독자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³⁾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등의 사항이 현행법 내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인지, 또는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⁴⁾ 선거연수원은 선거교육 계획 수립 및 선거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98

‘제정법률안’은 규율하려는 입법사항이 기존의 법률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는 규율하기 곤란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사무기구등)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 현행과 제정안 선거교육 관련 비교 》

구분	현행 ⁵⁾	제정안
계획 수립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장) 수립	중앙선관위원장(기본계획) 선거연수원장(연도별 시행계획)
교육·연수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학교, 시설, 단체 간 협력망 구축 교원 연수 지원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장) 사업 추진	<u>선거교육진흥원(신규 설립)</u>
지역 선거교육 지원	시·도선관위(사무처)	<u>선거교육담당관</u> 지정 (시·도선관위 사무처 직원) <u>선거교육지역센터</u> 설립 (선거교육진흥원 하부조직)
학교 교육과정 반영	사회과 교과과목 내 반영(제도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교과외활동(자율)	'선거교육' 반영 법정 의무화

《 2026년 선거연수원의 교육·연수 계획 》

구 분	과 정 명	대 상	기간	일정	운 영	
					횟수	인원
합 계	11개 과정				3,266	430,280
유권자 등 과정(10)	새내기유권자 교육	고등학생	1일	연중	2,000	400,000
	민주주의 선거교실	초·중학생	1일	연중	800	20,000
	청소년선거캠프	고등학생	2일	7~8월	1	50
	교원연수	초·중·고교 교원	1~3일	연중	69	2,700
	대학생 등 정치참여 연수	대학생·청년유권자	1~2일	연중	30	1,000
	대학생학점인정과정	대학생	15주	3~6월 9~12월	2	120
	사회단체 협업 연수	사회단체 회원 등	1~2일	연중	2	160
	다문화가족 연수	다문화유권자	1일	연 중	150	2,500
	장애인유권자 연수	장애인유권자	1일	연중	200	3,500
	북한이탈주민 연수	북한이탈주민	1일	연 중	10	100
선거교육 강사과정(1)	선거교육강사 양성과정	외부 초빙교수및 선거교육강사 등	1 ~ 2일	연중	2	1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현행의 경우 선거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 하위규정과 예산 사업 등으로 선거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중임.

다만,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기능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정책 조직 또는 별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선거교육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만으로는 선거교육의 중장기 추진계획, 관계기관 협력 및 재정지원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선거교육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여 목적·범위·주체 및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기준 3개장, 16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하부터는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함.

《 제정안의 구성체계 》

구분	조문 내용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선거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	정의
	제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선거교육의 기본계획 등	
	제7조	선거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	선거교육담당관
	제10조	선거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3장 선거교육의 지원 등	
	제11조	선거교육 연구·개발
	제12조	선거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학교 선거교육의 진흥
	제14조	사회 선거교육 지원
	제15조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	국제교류·협력 증진
부칙	시행일	

IV.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목적, 기본원칙 및 정의 (제1장, 안 제1조·제2조·제3조)

선거교육지원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지원하며 나아가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교육의 기본원칙) ① 선거교육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선거교육은 공정과 중립을 담보하여야 하며,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선거교육은 국내·외, 학교 및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선거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교육"이란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미와 중요성,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의 이해, 투표 및 개표의 절차와 방법,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등 선거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이해하게 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선거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행하는 선거교육을 말한다.

3. "사회 선거교육"이란 학교 선거교육을 제외한 모든 선거교육을 말한다.

제정안의 제명은 「선거교육지원법안」 이고, 안 제1조는 선거교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식 제고와 정치참여 지원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거교육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참고로, 특정 교육 분야의 진흥·지원에 관한 입법례에서는 「○○교육진흥법」, 「○○교육지원법」과 같은 제명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⁶⁾

안 제2조는 선거교육의 공정성·중립성 및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 원칙 등을 이 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선거 교육 관련 핵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다만, 안 제3조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3조제1호의 정의 중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제도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입법례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국민투표 등에 대하여 근거법률을 명시하고 있음.⁷⁾

6) 「인성교육진흥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통일교육 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교육지원법」 등

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가.~나. (생략)

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7.~8. (생략)

둘째, 안 제3조제3호는 사회 선거교육을 “학교 선거교육을 제외한 모든 선거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선거교육의 범위를 학교 선거교육의 반대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 개념의 외연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의 실시 주체 또는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① 「법교육지원법」은 ‘사회 법교육’을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실시 주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도 ‘사회 문화예술교육’도 실시주체의 명시를 통해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음.

《 사회교육 관련 정의규정 입법례 》

구 분	주요내용
「법교육지원법」	제2조(정의)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 1.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 (안 제4조·제5조·제6조)

제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거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선거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4. 선거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관리
5. 선거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6. 선거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7. 그 밖에 선거교육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는 선거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거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4조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함)가 선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선관위원장”이라 함)이 선거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협력망 구축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책임 있는 집행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선거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선거교육 콘텐츠 개발, 선거교육강사 양성 등 다양한 선거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선관위원장의 소관사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교육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선거교육 관련 사업 현황 》

구분	사업 내용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교육·연수과정	민주주의 선거교실	초·중학생	·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 · 민주적인 학교선거를 위한 역할 · 선거와 미디어리터러시(AI시대의 디지털 시민성) 등
	청소년 선거캠프	고등학생	· 헌법과 선거의 중요성 알기, 헌법 조문 만들기 · 정당의 역할과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기능 등 · 공동체 의사결정, 대표자 선출 등 · 모의 후보자 선거공약 발표 및 투·개표
	새내기유권자 연수	고등학생	· 민주주의와 주권 행사의 중요성, 새내기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및 투·개표 등 선거절차 · 새내기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과 선거정보 · 선거·정치 정보의 올바른 습득·활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연수	초·중·고교 교원	· 미래유권자 선거교육을 위한 교육자의 역할 ·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 교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사례예시 · 선거교육 콘텐츠 운영 실습 ·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대학생 등 정치참여 연수	대학생·청년 유권자 등	· 민주주의와 주권의 가치 · 우리나라 선거·정치제도 · 선거·정치현장 견학·체험 ·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체험 ·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및 선거여론조사 리터러시
	다문화가족 연수	다문화 유권자	· 민주주의 및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 · 선거참여의 중요성,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 투·개표 절차 등 선거체험 · 선거체험관 및 시·도의회 등 견학

구분	사업 내용		
	과정명	대상	교육내용
	장애인유권자 연수	장애인 유권자	·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 ·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 투표 편의를 위한 보조용구 사용법 설명 · 투·개표 절차 등 선거체험
	북한이탈주민 연수	북한 이탈주민	· 민주주의 및 우리나라 선거·정치제도의 이해 ·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방안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선거체험
	선거교육강사 양성과정	초빙교수, 선거교육 강사	· 선거교육의 이해 및 강사의 기본 소양 · 새내기유권자, 다문화가족 등 강의대상별 특성 반영 콘텐츠 활용방법 · 투·개표 절차 및 정확한 선거정보 안내 · 선거교육 경험사례 소개 및 시범 강의 · 강의교안 작성 실습 및 교수기법 ·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등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거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보급 · 각종 연수 및 선거교육강사 등의 강의역량 제고용 교재로 활용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선관위의 선거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선거교육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안 제6조는 선거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교육 지원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정립하려는 취지임.

3.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선거교육담당관 지정(제2장, 안 제7조·제8조·제9조)

제2장 선거교육기본계획 등

제7조(선거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선거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거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선거교육 사업의 추진계획
3.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4. 선거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교육내용·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선거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6. 선거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망의 구축·운영
7. 선거교육 실태의 조사·연구 및 평가
8. 그 밖에 선거교육의 시행·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 및 같은 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선거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에 따른 선거연수원의 장(이하 “선거연수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선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난 연도의 추진실적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선거교육담당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거교육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교육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에 맞는 선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
 2. 지역 선거교육 수요자에 대한 교육
 3.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간의 협력망 구축·운영
 4. 지역의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선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선거교육담당관의 지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연수원장이 이를 구체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교육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

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주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
수립내용	· 선거교육의 목표 및 방향 · 사업 추진계획 · 전문인력 양성 · 교육 및 교재 연구·개발 · 시설·장비 확충 · 국내·외 협력망 구축 · 실태조사·연구 및 평가 · 그 밖에 선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선거교육 사업 추진
수립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의견청취(의무) + 전문가 의견청취(임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 확정	시행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 전년도 추진실적 결과보고
비고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안 제9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선거교육 담당관을 지정하여 지역 맞춤형 선거교육, 교육 수요자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선거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선거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전담직원 지정에 관한 규율 사례 》

구 분	주요내용
「국어기본법」 ⁸⁾	국어책임관 지정 근거는 법률에 두고, 담당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⁹⁾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를 시행령에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¹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를 시행령에서 규정

8) 「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홍보나 국어 담당 부서의 장

2. 제1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9)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당,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④ (생략)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의 홍보
과 전임직원이 선거연수원 교육·연수 계획에 따라 선거교육을 수행
하고 있고, 제정안의 선거교육담당관은 별도의 조직 신설이 아닌 기
존 인력 중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한편,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열거
순서가 서로 다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통합특별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바,¹¹⁾ 법률 내 표현의 통일성과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련 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광역지방자치단체 열거 방식 비교 》

조 문	규정내용
제정안 제9조①	특별시·광역시· <u>도</u> · <u>특별자치시</u>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정안 제9조②3.	특별시·광역시· <u>특별자치시</u> · <u>도</u> ·특별자치도 교육감
「지방자치법」 제2조①1.	특별시, <u>통합특별시</u> , 광역시, <u>특별자치시</u> , <u>도</u> , 특별자치도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1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4. 선거교육진흥원의 설립(안 제10조)

제10조(선거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선거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주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선거교육 시설 및 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선거교육 전문인력 및 민간 선거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3. 선거교육의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수 지원
5. 선거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
6. 온라인선거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진흥원은 지역 선거교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하는 선거교육지역센

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⑩ 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선거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⑪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10조는 ① 선거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교육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② 선거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 교원 연수 지원, 온라인선거교육시스템 구축, 협력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③ 필요시 선거교육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선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교육대상 및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진흥원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민주시민교육, 각종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 중 상당 부분(단체 간 상호 연계, 연수, 선거교육에 대한 연구, 시스템 구축·관리 등)은 선거연수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흥원 설립 시 기존 조직과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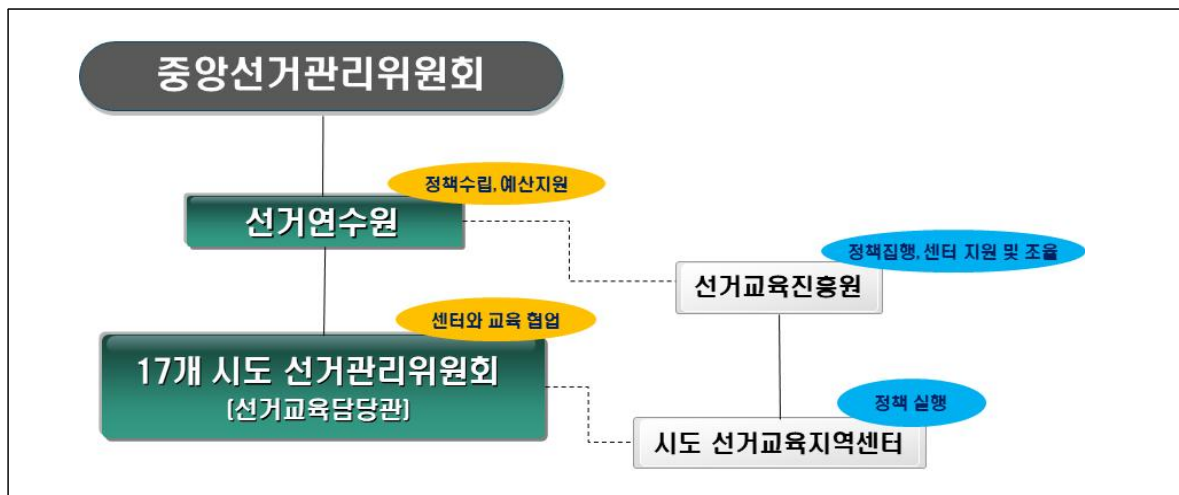
《 선거연수원 수행사업과 진흥원 업무 비교 》

업무 분야	선거연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9조)	선거교육진흥원 (제정안)	비고
협력체계 구축	학화·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계사업 추진	학교·선거교육 시설 및 단체 간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유사
교육·연수	선관위 공무원 교육, 위원 연수,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 국민, 학생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대행 사업 ¹²⁾	-
전문인력 양성	- (※ 실제 선거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선거교육 전문인력 및 민간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연수	실제 사업과 유사
연구·개발	직무교육·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조사·연구	선거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유사
온라인 교육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온라인선거교육시스템 구축·관리	유사
교원 지원	- (※ 실제 교원 연수 실시)	교원 연수 지원	실제 사업과 유사
시설 지원	연수시설·장비 관리	선거교육 시설·장비 확충 및 지원	일부 차이
지역 지원	- (※ 시·도선관위 중심 교육 운영)	선거교육지역센터 설치	추진체계 차이

12)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교육·연수 업무도 진흥원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함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이 5년 단위 및 연 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 선거교육의 전략적 방향을 설계하는 상위 기관이라면, 진흥원은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실행기관으로서 역할상 차별성이 있으며,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관 간 기능 배분 및 역할 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임.

《 선거교육 운영 체계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둘째, 제정안은 진흥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진흥원 설립 시 인력 확충, 사무공간 확보, 운영비 지원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정책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진흥원 설립 시 연간 약 36억 원(선거교육·연수 20억 원, 기관운영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¹³⁾

국회예산정책처는 선거연수원과 제정안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업무 조정·업무위탁·업무대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진흥원 설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¹⁴⁾

따라서 진흥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선거교육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선거연수원과 기능 중복 가능성, 조직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또는 기존 조직의 기능을 확대·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지역센터 설치 소요 예산은 미포함

14) 선거교육지원법안 비용추계서(국회예산정책처) p.3

5. 선거교육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제3장, 안 제11조·제12조)

제3장 선거교육의 지원 등

제11조(선거교육 연구·개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교육에 관한 정책과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선거교육 전문인력 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교육을 행할 역량을 갖춘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에게 연수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선거교육 전문인력은 진흥원이 개설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1조는 선거교육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청소년 유권자 증가 등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방법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연구기관·단체의 지원·육성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 및 지원 가능한 사업의 유형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2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수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진흥원의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이 중 같은 조 제1항은 선거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현재 중앙선거위가 선거연수원을 통하여 선거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선거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실적 및 계획 》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예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회 (1박2일)	48명	2회 (1박2일, 화상)	127명	3회 (권역별, 1일)	111명	2회	150명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선거교육 전문인력’을 진흥원이 개설한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위촉 주체와 위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① 위촉의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② 위촉 기준 또한 단순히 전문과정 이수 여부에 한정하기보다는 교육경력, 강의역량, 평가 결과 또는 자격검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촉 이후의 보수교육, 자격 유지요건, 위촉의 취소 또는 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사의 자격 부여 주체, 자격요건, 결격사유, 자격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⁵⁾

1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환경교육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3. (생략)

③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환경교육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환경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어린이집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학교 선거교육 진흥 및 사회 선거교육 지원(안 제13조·제14조)

제13조(학교 선거교육의 진흥) ① 국가는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교 선거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학교 선거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학교 선거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과내용의 반영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선거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2.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2.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모의 체험교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회 선거교육 지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사회 선거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등 사회 선거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3조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거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편성 지원, 실태조사 실시, 교원 연수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 선거교육 관련 시설·장비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모의체험교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 일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 선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취지임.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수업시수의 한계와 개념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¹⁶⁾ 학교 교육과정 내 선거교육 및 모의체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¹⁷⁾

《 교육과정 내 민주주의·선거교육 반영 현황 》

◆ 교육과정 내 민주주의·선거교육 반영 현황
■ 초등(3~6학년) 사회 및 중학교 사회·역사, 고등학교 한국사·통합사회·정치·법과 사회·윤리와사상 등 교과목 성취 기준에 ‘민주주의’, ‘선거’ 내용* 포함
* 민주주의 원리 및 의미, 법치주의·권력 분립 등 관련 제도, 선거의 기능·원칙 등
■ 법교과 학습주제로 ‘민주시민교육’ 포함

※ 자료: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교육부, 2026. 1.)

다만, 학교 선거교육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을 정하고, 교육감이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16) 「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와 문제점·개선방안」 p.171(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1. 4.)
‘선거연령 16살 하향’ 찬성 많지만...학교 선거교육 수업은 ‘준비 부족’(한겨레, 2026. 2. 6.)

17)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 대상 모의투표 실시 등 선거교육 실시를 허용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에 실시하는 모의투표는 선거여론조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254,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0.8.25.)이 제안된 바 있음.

기준과 내용을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¹⁸⁾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안 제13조제2항의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과내용의 반영 등에 관한 지원 요청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 교육과정 반영 관련 입법례 》

구 분	주요내용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u>국가교육위원회</u>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 <u>교육감</u> ”이라 한다)에게 <u>요청</u>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u>교육부장관과 협의</u> 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u>교육부장관에게 요청</u>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학교 선거교육의 주요 협력 대상은 국가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교육감이지만, 민주시민교육, 디지털 정보교육 등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되 “그 밖에 학교 선거교육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헌법교육, 선거교육 등의 강화를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¹⁹⁾

향후, 학교 선거교육의 추진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와 교육부 간 기능 배분 및 협력체계의 정립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의안번호 2208680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김문숙의원 대표발의, 2025. 3. 6.

의안번호 2210100 「학교시민교육법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2025. 4. 24.

의안번호 2218418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2026. 4. 17.

《 민주시민교육 주요 내용 》

1.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역량 함양	①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전문화·내실화 ② 체계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확대 ③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민주시민의 역량 개발 지원 ④ 민주시민교육 프레임워크 및 역량지표 개발로 체계적 성과 관리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①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② 우수모델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③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④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민주시민교육 브랜드 발굴 지원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①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 강화 ②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강화 ③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④ 성인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4. 제도적 기반 마련	▲ ①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② 학교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정립 및 지원체계 강화

※ 자료: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교육부, 2026. 1.

둘째, 안 제13조제6항에 따른 선거에 관한 모의체험교육의 실시 시기, 운영 방식, 허용되는 교육 내용 및 「공직선거법」상 적용 제외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13조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모의체험교육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8조²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학생들이 모의투표 및 개표 등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선거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적용을 배제하면서도 ‘선거에 관한 모의체험교육’의 운영 방식 및 허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여론조사의 실시 방법 및 결과의 공표 등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적용 제외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공직선거법」 제108조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내용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한	선거일 임박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제한, 공표·보도 전 등록 및 공개의무, 미등록 또는 기준위반 조사결과에의 공표·보도 금지, 특정 조사결과에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 금지(제1항, 제6항~제8항, 제12항).
여론조사 실시 방법 제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 유사 모형 사용 및 후보자·정당 명의 사용 금지, 편향질문·응답유도 금지, 야간 전화조사 제한, 중복응답 및 중복 응답 유도 금지(제2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여론조사 신고 및 관리	여론조사 사전 신고, 보완요구 및 이의신청, 공표 전 홈페이지 등록, 관련 자료의 보관·제출 의무 등(제3항, 제4항, 제7항, 제9항, 제14항)

※ 여론조사는 모의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

따라서 모의체험교육이 학교 선거교육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서
도 실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모의체험교육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공직선거법」상 적용 제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회 선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
행하고, 필요한 시설·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
회 선거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
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4조제2항은 사회 선거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및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 대상,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등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안 제15조·제16조)

제15조(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교육 사업의 시행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및 공공단체등(「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단체등을 말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교류·협력 증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선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 그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5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선거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

안 제16조는 선거교육 분야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외 선거교육 사례 및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선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외국 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자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외국의 관계기관·단체 및 국제기구 자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구별될 필요가 있는바, 지원의 취지와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지원 대상·기준 및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 부칙에서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작성, 설립등기, 임직원 구성, 예산 확보, 하위법령 정비 등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진흥원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일 전에 정관 작성, 설립등기, 설립위원회의 구성 등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²¹⁾

따라서 부칙에 ‘설립준비’ 조항을 추가하여 시행일 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52

2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842

법인이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가 필요하다. 이 행위가 종료되어야 법인이 설립된 것이므로 법률 시행일에 특수법인이 설립되도록 하려면 시행일 전에 이러한 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체, 절차 및 내용 등을 준비행위 규정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

선거교육 관련 사업 추진 현황(2023 ~ 2025)

예산액: 2,414백, 집행액: 1,484백, 집행률: 61.5% 2023년 집행부진 사유: 주요 정당의 당내 사정 등으로 인한 선거·정당관계자등과정 연수 신청 저조와 유권자·강사양성·기관/단체협업 연수 및 강연 콘테스트 등 일부 과정 축소에 따른 강사료 등 불용 발생						
구분	과 정 명	대 상	기간	운 영		시행주체
				횟수	인원	
합 계	14개 과정			3,474	433,928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정당사무처당원연수	정당사무처 간부·직원 등	1 ~ 2일	17	2,163	선거연수원
	일반당원연수	일반당원등	1 ~ 2일	34	4,960	선거연수원
유 권 자 과 정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유권자	12주	1	40	선거연수원
	여성정치참여연수	여성유권자 ·단체회원· 정치지망생	1 ~ 5일	49	2,366	선거연수원 ·시도선관위
	시민사회단체등협업연수	기관·단체 회원 등	1 ~ 2일	92	3,364	선거연수원 ·시도선관위
	대학생등정치참여연수	대학생·청년 유권자 등	1 ~ 2일	58	2,117	선거연수원 ·시도선관위
청 소 년 선 거 체 협 정	새내기유권자연수	고등학생	1일	1,804	375,301	시도선관위
	민주주의선거교실	초·중학생	1일	1,117	37,469	시도선관위
	청소년선거캠프	고등학생	1 ~ 2일	2	64	선거연수원
	강연콘테스트	중·고등학생	3일	1	27	선거연수원
선 거 참 여 도 움 과 정	다문화가족연수	다문화가족	1일	151	2,449	시도선관위
	북한이탈주민연수	북한이탈주민	1일	21	115	선거연수원
	장애인유권자연수	장애인유권자	1일	126	3,445	시도선관위
선거정치교육 강 사 과 정	선거정치교육강사양성과정	외부 초빙교수및 선거정치 교육강사 등	2일	1	48	선거연수원

2024년 예산액: 1,266백, 집행액:920백, 집행률: 72.7%

구분	과 정 명	대 상	기간	운 영		시행주체
				횟수	인원	
합 계	13개 과정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	정당사무처당원연수	정당사무처 간부·직원 등	1~2일	14	1,995	선거연수원
	일반당원연수	일반당원등	1~2일	8	2,000	선거연수원
유권자 과정	여성정치참여연수	여성유권자· 단체회원· 정치지망생	1~5일	70	3,214	선거연수원 시도선관위
	시민사회단체등협업연수	기관·단체 회원 등	1~2일	78	3,036	선거연수원 시도선관위
	대학생등정치참여연수	대학생·청년 유권자 등	1~2일	55	2,054	선거연수원 시도선관위
	대학생학점인정과정	대학생	15주	2	70	선거연수원
청소년 선거체 험과정	새내기유권자연수	고등학생	1일	2,345	452,066	시도선관위
	민주주의선거교실	초·중학생	1일	868	30,295	시도선관위
	청소년선거캠프	고등학생	1~2일	1	75	선거연수원
선거참여 도움과정	다문화가족연수	다문화가족	1일	144	2,715	시도선관위
	북한이탈주민연수	북한이탈주민	1일	19	208	선거연수원
	장애인유권자연수	장애인유권자	1일	164	5,152	시도선관위
선거정치교육 강사과정	선거정치교육강사양성과정	외부 초빙교수및 선거정치 교육강사 등	1~2일 1~11월	2	127	선거연수원

2025년 예산액: 477백, 집행액: 456백, 집행률: 95.6%

구 분	과 정 명	대 상	기간	운 영		시행주체
				횟수	인원	
합 계	8개 과정			4,005	649,356	
유 권 자 등 과	대학생 등 정치참여 연수	대학생·청년 유권자 등	1 ~ 2일	36	1,373	선거연수원 시도선관위
	새내기유권자 연수	고등학생	1일	2,622	595,542	시도선관위
	민주주의 선거교실	초·중학생	1일	988	43,476	시도선관위
	청소년 선거캠프	고등학생	1 ~ 2일	1	53	선거연수원
	다문화가족 연수	다문화유권자	1일	97	1,635	시도선관위
	장애인유권자 연수	장애인유권자	1일	247	6,971	시도선관위
	북한이탈주민 연수	북한이탈주민	1일	11	195	선거연수원
선 거 교 육 강 사 과 정	선거교육강사양성과정	외부 초빙교수 및 선거교육강사 등	1 일	3	111	선거연수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